

남북협력기금

재무제표에 대한

감 사 보 고 서

제20기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목 차

	<u>페이지</u>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1~2
재 무 제 표	
· 재 정 상 태 표	3
· 재 정 운 영 표	4
· 순자산변동표	5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6~15

외 부 감사 인 의 감사 보고서

남북협력기금
기금수탁관리자 귀하

본 감사인은 첨부된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의 201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표와 동일
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
할 책임은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에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
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비교
표시된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아니한 것입니다.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
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
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
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기금수탁관리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가 남북협력기금의 201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
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정운영결과 및 순자산의 변동을 국가회계기준 및 남북협력
기금운용 관리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삼일회계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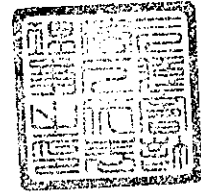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91번지 LS 용산타워 (140-702) 서울용산우체국사서함 266호 (140-600) www.samil.com

삼일회계법인은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PricewaterhouseCoopers International Limited(PwCIL)의 한국 회원사입니다.
PwCIL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사들은 각각 별개의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들입니다.

다음은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와 5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금은 북한조선무역은행 대출금 1,059,791백만원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출금 1,374,393백만원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 61조에 의거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12월 31일 현재 상기 북한조선무역은행 대출금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출금은 관련 차주의 특성상 향후 상황변화 등에 따라 회수가능성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 중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출금과 관련하여서는 2010년 12월 31일 현재 대북경수로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에 따른 향후 사업재개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동 대출금의 회수가능성에는 특히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삼 일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安昊台



2011년 1월 28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2011년 1월 28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기금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재 정 상 태 표

제20기 2010년 12월 31일 현재
제19기 2009년 12월 31일 현재

남북협력기금

(단위: 원)

과 목	제 20(당) 기		제 19(전) 기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자 산				
I. 유동자산		1,022,473,499,920		1,048,696,984,204
1.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 3)		69,722,388,320		101,834,618,960
현금및현금등가물		69,722,388,320		101,834,618,960
2. 단기금융상품(주석 3)		450,000,000,000		699,500,000,000
정기예금		450,000,000,000		699,500,000,000
3. 단기투자증권(주석 4)		434,042,056,425		203,900,371,150
지분증권		352,094,243,958		-
채무증권		81,947,812,467		203,900,371,150
4. 미수채권		7,046,153,654		10,677,395,577
미수이자수익		7,046,153,654		10,677,395,577
5. 단기대여금(주석 5)	64,545,135,770		34,865,728,310	
정부외단기대여금	64,545,135,770		34,865,728,310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2,882,234,249)	61,662,901,521	(2,081,129,793)	32,784,598,517
단기용자금대손충당금	(2,389,273,241)		(2,081,129,793)	
단기용자보조원가충당금	(492,961,008)		-	
II. 투자자산		2,664,989,863,942		2,711,021,304,247
1. 장기투자증권(주석 4)		-		9,877,361,972
채무증권		-		9,877,361,972
2. 장기대여금(주석 5, 6)	2,669,790,153,999		2,703,735,302,225	
정부외장기대여금	2,669,790,153,999		2,703,735,302,225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4,800,290,057)	2,664,989,863,942	(2,591,359,950)	2,701,143,942,275
장기용자금대손충당금	(4,790,056,554)		(2,591,359,950)	
장기용자보조원가충당금	(10,233,503)		-	
III 기타비유동자산		58,786,534,256		45,634,447,844
1. 장기미수채권(주석 6)		58,786,534,256		45,634,447,844
장기미수이자수익		58,786,534,256		45,634,447,844
자 산 총 계		3,746,249,898,118		3,805,352,736,295
부 채				
I. 유동부채		18,799,697,323		837,314,916,896
1. 유동성장기차입부채(주석 7)		-		820,000,000,000
유동성정부내장기차입금		-		820,000,000,000
2. 기타유동부채		18,799,697,323		17,314,916,896
미지급비용		18,799,697,323		17,314,916,896
II. 장기차입부채		2,258,091,000,000		1,383,091,000,000
1. 장기차입금(주석 7)		2,258,091,000,000		1,383,091,000,000
정부내장기차입금		2,258,091,000,000		1,383,091,000,000
부 채 총 계		2,276,890,697,323		2,220,405,916,896
순 자 산				
I. 기본순자산		-		-
II. 적립금 및 잉여금		1,449,264,956,837		1,574,046,448,249
III 순자산조정(주석 9)		20,094,243,958		10,900,371,150
순 자 산 계		1,469,359,200,795		1,584,946,819,399
부 채 와 순 자 산 계		3,746,249,898,118		3,805,352,736,295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재 정 운 영 표

제20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19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남북협력기금

(단위: 원)

과 목	제 20(당) 기			제 19(전) 기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I. 프로그램순원가	46,892,533,918	(13,110,753,311)	33,781,780,607	81,792,823,281	(7,863,949,296)	73,928,873,985
1. 남북사회문화교류 프로그램	2,187,985,825	(136,164,630)	2,051,821,195	3,145,170,491	(1,579,300)	3,133,591,191
2. 인도적사업 프로그램	21,870,211,244	(4,080,617,070)	17,789,594,174	32,722,273,247	(624,270,320)	32,098,002,927
3.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	18,248,617,301	(2,994,920,450)	15,253,696,851	43,045,249,403	(1,273,643,070)	41,771,606,333
4. 남북경제협력(융자) 프로그램	4,585,719,548	(5,899,051,161)	(1,313,331,613)	2,880,130,140	(5,954,456,606)	(3,074,326,466)
II. 관리운영비			77,738,910			75,424,340
1. 경비			77,738,910			75,424,340
III. 비배분비용			139,821,486,612			193,241,116,131
1. 이자비용			112,042,282,297			106,940,869,276
2. 평가손실			27,779,204,315			86,298,615,760
3. 기타비용			-			1,631,095
IV. 비배분수익			48,899,056,797			58,718,320,380
1. 이자수익			40,983,262,007			54,736,941,390
2. 자산처분이익			7,915,794,790			3,981,378,990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124,781,949,332			208,527,094,076
VI. 비교환수익 등			457,920			55,757,150
1. 기타재원조달및이전			457,920			55,757,150
VII. 재정운영결과(V-VI)			124,781,491,412			208,471,336,926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순자산변동표

제20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19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남북협력기금

(단위:원)

과목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I. 기초순자산(전기초)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1,782,517,785,175	4,840,766,360	1,787,358,551,535
1. 보고금액	-	1,782,517,785,175	4,840,766,360	1,787,358,551,535
II. 재정운영결과	-	208,471,336,926	-	208,471,336,926
III. 조정항목	-	-	6,059,604,790	6,059,604,790
1. 투자증권평가이익	-	-	6,059,604,790	6,059,604,790
IV. 기말순자산(전기말)(I - II + III)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1,574,046,448,249	10,900,371,150	1,584,946,819,399
I. 기초순자산(당기초)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1,574,046,448,249	10,900,371,150	1,584,946,819,399
1. 보고금액	-	1,574,046,448,249	10,900,371,150	1,584,946,819,399
II. 재정운영결과	-	124,781,491,412	-	124,781,491,412
III. 조정항목	-	-	9,193,872,808	9,193,872,808
1. 투자증권평가이익	-	-	9,193,872,808	9,193,872,808
IV. 기말순자산(당기말)(I - II + III)	-	1,449,264,956,837	20,094,243,958	1,469,359,200,795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20 기 : 2010년 12월 31일 현재

남북협력기금

1. 기금의 개요 :

남북협력기금(이하“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0년 8월 1일 제정공포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대한민국정부가 25,000백만원을 출연함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남북협력기금법 제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

기금의 재무제표는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운용 관리규정, 그리고 2009 회계연도부터 적용된 국가회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회계기준 및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회계·기금별 세부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기금이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익의 인식 -

기금의 교환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있으며,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치금 및 대여금 등에 대한 이자수익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인식합니다.

나. 현금및현금성자산 -

기금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보통예금 및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

다. 장·단기금융상품 -

기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에금, 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단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현금및현금성자산 또는 단기금융상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을 장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라. 유가증권의 평가 -

기금은 유가증권에 대해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개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산정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을 자산의 분류기준에 따라 단기투자증권과 장기투자증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내 또는 1년 내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단기투자증권을 포함하며, 장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이상 또는 1년 이후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장기투자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지분증권과 기타 장기투자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투자목적의 장기투자증권 또는 단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재무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 유자보조원가충당금 -

기금은 대여금과 만기가 유사한 국채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제공되는 대여금의 경우 융자회계준칙에 의거 유자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의 대여금 중 북한 조선무역은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등 대여금에 대해서는 차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융자회계준칙 제1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승인 하에 유자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남북협력기금

또한, 용자회계준칙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실행된 용자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 31일 이전 실행된 용자금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대손추산액을 용자보조원가충당금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 대손충당금 -

기금은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대여금에 대하여 차주, 보증인, 유가증권 발행인, 보증의뢰인 등 관련거래처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였습니다. 기금은 상기 기준에 따라 분류된 대여금에 대해서 각각 0.85%이상(일부 업종은 0.9%이상), 7%이상, 20%이상, 50%이상 및 100%상당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의 대여금 중 북한 조선무역은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등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61조에 의거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주석 5. 라. 참조). 상기 조항에 의하면 “남북한 당국간 사업, 국제기구가 차주가 되거나 또는 지급 보증하는 사업, 다음 각호의 기관에 대한 채권 및 당해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중 담보 해당금액, 기타 통일부장관이 해당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1) OECD 회원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 2) 지방자치단체
-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사. 우발상황 -

기금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며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손실금액을 기타의기타비유 동부채(기타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않거나, 우발손실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써 주석 기재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아.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 -

기금은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를 재무제표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가 고시한 미달러화 기준환율(당기말 ₩1,138.9/USD) 및 제정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산손익을 외화환산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 출연금 -

기금이 수령하는 정부 또는 민간으로부터의 출연금은 기금설치 목적을 위해 지출되는 재원의 용도에 따라 달리 회계처리하며,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 또는 순자산변동표 조정항목의 기타 순자산증감으로 처리합니다. 단, 재원의 용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주된 용도에 따라 회계처리 합니다.

차. 위탁수수료 --

기금은 남북협력기금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에 운용 및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통일부와 협의된 위탁수수료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지급하고 프로그램원가(지급수수료)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카. 법인세비용 -

기금의 운용소득은 전액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비용을 계상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계속
=====

남북협력기금

3.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

2010년과 2009년 12월 31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연이자율(%)	금 액		금융기관
	2010. 12.31	2010	2009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u>현금및현금성자산</u>				
MMDA	2.55	₩ 4,014	₩ 4,823	국민은행
MMF	실적배당	16,708	18,012	삼성자산운용(주)
정기예금	3.09 - 3.37	49,000	79,000	우리은행 외
		69,722	101,835	
<u>단기금융상품</u>				
정기예금	3.14 - 5.01	450,000	699,500	우리은행 외
		₩ 519,722	₩ 699,500	

(*) 당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은 없습니다.

4. 장·단기투자증권 :

2010년 12월 31일 현재 단기투자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2010			2009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취득원가	공정가액	장부가액	취득원가	공정가액	장부가액
<u>단기투자증권</u>						
지분증권(*)	₩ 332,000	₩ 352,094	₩352,094	₩ 193,000	₩ 203,900	₩ 203,900
채무증권	81,793	81,948	81,948	-	-	-
	413,793	434,042	434,042	193,000	203,900	203,900
<u>장기투자증권</u>						
채무증권	-	-	-	9,793	9,877	9,877
	₩413,793	₩ 434,042	₩434,042	₩ 202,793	₩ 213,777	₩ 213,777

(*)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투자증권 평가이익 15,113백만원 및 8,142백만원을 장부가액에 반영하였습니다.

(**) 당기 및 전기 중 단기투자증권과 관련하여 인식한 이자수익은 각각 1,174백만원 및 770백만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계속

=====

남북협력기금

5. 대여금 :

가. 2010년과 2009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내 용	연이자율(%)	금 액	
		2010.12.31	2010	2009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정부의단기대여금	단기용자금	1.0 - 5.9	₩ 64,545	₩ 34,866
정부의장기대여금	장기용자금	1.0 - 5.9	2,669,790	2,703,735
			₩ 2,734,335	₩ 2,738,601

나. 2010년과 2009년 12월 31일 현재 장·단기용자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내 용	연이자율(%)	금 액	
		2010.12.31	2010	2009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단기용자금	실적한도대출	1.0 - 2.4	₩ 8,961	₩ 9,393
	반출자금대출	3.0 - 4.9	466	466
	특별경제협력자금대출	2.0 - 3.0	30,232	-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1.9 - 5.9	22,514	22,715
	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1.0	2,372	2,292
			64,545	34,866
장기용자금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1.9 - 5.9	182,744	191,158
	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1.0	52,862	51,686
	경수로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	1,374,393	1,374,393
	외화표시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1.0	1,059,791	1,086,498
			2,669,790	2,703,735
			₩ 2,734,335	₩ 2,738,601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계속

남북협력기금

5. 대여금, 계속 :

다. 2010년 12월 31일 현재 대출종류별 정부승인금액 및 미집행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USD, 백만원).

대출종류	차주별	정부승인금액	집행금액(**)	미집행금액
대북식량차관(2000)(*)	북한조선무역은행	USD 100,000	USD 88,355	USD -
대북식량차관(2002)(*)	북한조선무역은행	110,000	106,000	-
대북식량차관(2003)(*)	북한조선무역은행	110,000	106,000	-
대북식량차관(2004)(*)	북한조선무역은행	124,000	117,986	-
대북식량차관(2005)(*)	북한조선무역은행	155,000	150,000	-
대북식량차관(2007)(*)	북한조선무역은행	154,000	151,701	-
대북자재장비차관(2002)	북한조선무역은행	45,000	42,887	2,113
대북자재장비차관(2003)	북한조선무역은행	60,000	68,051	(8,051)
대북자재장비차관(2005)	북한조선무역은행	28,500	21,959	6,541
대북경공업원자재차관(2007)(*)	북한조선무역은행	80,000	77,600	-
		USD 966,500	USD 930,539	USD 603
대북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 3,542,000	₩ 1,374,393	₩ -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대출(2004)(*)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26,100	20,629	-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대출(2005)(*)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900	801	-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대출(2007)(*)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10,400	9,255	-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대출(2008)(*)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15,900	13,556	-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대출(2009)(*)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8,910	7,290	-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대출(2010)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3,768	3,703	65
반출입 및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실적한도대출 포함)	한국관광공사 외	319,473	244,917	42,307
		₩ 3,927,451	₩ 1,674,544	₩ 42,372

(*) 집행 완료

(**) 2010년 12월 31일 현재 대북식량차관, 대북자재장비차관 및 대북경공업원자재차관의
원화환산액은 1,059,791백만원 입니다(주석 6참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계속

남북협력기금

라. 2010년과 2009년 12월 31일 현재 장·단기융자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2010		2009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융자금액	대손충당금	융자금액	대손충당금
대북식량및자재장비등 차관(*)	₩1,059,791	₩ -	₩1,086,498	₩ -
대북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	1,374,393	-	1,374,393	-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대출(*)	55,234	-	53,978	-
반출입 및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실적한도대출 포함)(**)	244,917	7,683	223,732	4,672
	<u>₩2,734,335</u>	<u>₩ 7,683</u>	<u>₩2,738,601</u>	<u>₩ 4,672</u>

(*) 기금은 상기 대출금에 대하여 융자회계준칙 제 14호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 61조에 의거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주석 2. 마, 바 참조). 그러나, 2010년 12월 31일 현재 상기 북한조선무역은행 대출금(대북식량차관, 대북자재장비차관 및 대북경공업원자재차관) 1,059,791백만원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대출금(대북경수로사업 본 공사비) 1,374,393백만원은 관련 차주의 특성상 향후 상황변화 등에 따라 회수가능성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 중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출금과 관련하여서는 2010년 12월 31일 현재 대북경수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서 이에 따른 향후 사업개개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동 대출금의 회수가능성에는 특히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 융자회계준칙에 의거하여 2010년 1월 1일 이후 실행된 융자금에 대해서는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2009년 12월 31일 이전 실행된 융자금은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주석 2. 마, 바 참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계속

남북협력기금

6. 외화자산 :

2010년과 2009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외화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USD, 백만원).

구 분	2010		2009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장기융자금(대북차관)	USD 930, 539	₩ 1,059,791	USD 930, 539	₩1,086,498
장기미수채권	45,354	51,653	37,377	43,642
	<u>USD 975,893</u>	<u>₩ 1,111,444</u>	<u>USD 967,916</u>	<u>₩1,130,140</u>

(*) 당기 중 기금의 외화자산 환산과 관련하여 계상된 외화환산손실 27,779백만원 중 26,706백만원은 장기융자금에서 1,073백만원은 장기미수채권에서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7. 장기차입금 :

가. 2010년 12월 31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차입처	연이자율(%)	금 액	
		2010.12.31	2010	2009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한국은행	4.12 - 5.89	₩ 2,258,091	₩ 2,203,091
(차감: 1년이내상환일도래분)			-	(820,000)
			<u>₩ 2,258,091</u>	<u>₩ 1,383,091</u>

나. 2010년 12월 31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연도별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상환연도	금 액
2013 년	₩ 930,000
2014 년	291,591
2015 년	90,500
2016 년 이후	946,000
	<u>₩ 2,258,091</u>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계속

남북협력기금

8. 우발채무 :

가. 기금은 남북간 거래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을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31일 현재 지급보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종 류	회 사 명	계약확정금액	계약미확정금액
대부 등 투자보험	삼덕통상(주) 외 97개 업체	₩ 221,370	₩ 81,801
지분 등 투자보험	남광토건(주) 외 129개 업체	110,495	51,300
권리 등 투자보험	한국산업단지공단 외 15개 업체	44,516	19,823
		₩ 376,381	₩ 152,924

9. 순자산조정 :

당기 중 순자산조정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 분	2010				2009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기초	증가	감소	기말	기초	증가	감소	기말
투자증권								
평가손익	₩10,900	₩15,113	₩5,919	₩20,094	₩ 4,841	₩ 8,142	₩ 2,083	₩10,900